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각종대회 입상자 포상규정

제정	2016. 02. 11.
개정	2022. 04. 27.
개정	2024. 11. 05.

제1조(목적)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이 규정은 국제 종합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등록된 지도자, 선수에 대한 시상금 포상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종합경기대회” (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란 올림픽대회(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동·하계), 세계선수권대회(종목별), 세계대학경기대회(동·하계)를 말한다.
2. “전국체육대회”란 전국체육대회(동, 하계)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대회) 포상금이 지급되는 각종 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체육대회(동·하계)
2. 올림픽대회(동·하계)
3. 아시아경기대회(동·하계)
4. 세계선수권대회(종목별)
5. 세계대학경기대회(동·하계)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각종대회 입상자 포상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시로 등록된 단체 선수, 지도자
2. 세종시를 연고로 하는 연고협약팀 선수, 지도자
3. 본회 회원종목단체 소속 선수, 지도자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각종대회 포상금 지급은 “별표 1, 2, 3호”와 같이 시행한다.

② 각종대회 포상은 제3조의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종목별 2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지도자의 포상금은 별표 2와 같이 지급한다.<신설 2024. 11 .05.>

제6조(시상부문) 제3조 1호에 대한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시상한다.

1. 표창수여

[공로패]

- 종합 1, 2, 3위에 입상한 경기단체장
- 종합성적 성취단체 경기단체장

(전대회 대비 100%이상 향상 종목으로 총점 1,000점이상 단체)

[표창패]

- 종합 1, 2, 3위에 입상한 경기단체 전무이사
- 종합성적 성취단체 전무이사

(전대회 대비 100%이상 향상종목으로 총점 1,000점이상 단체)

[표창장] 입상선수 지도자

[특별표창] 특별히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사장] 입상선수 소속단체장

[최우수선수상] 성적이 우수한 선수

[최우수지도자상]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

2. 시상금 및 성과금은 「별표 1, 2, 3」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포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1.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국체육대회 시상금 내역표

(단위 : 원)

구분	시상금		
신기록	세계신기록		5,000,000
	한국신기록		3,000,000
	대회신기록		1,000,000
연패기록	단체전	3연패 이상	20,000,000
	개인·단체전	3연패 이상	10,000,000
	개인	3연패 이상	5,000,000
입상지도자	1위		2,000,000
	2위		1,500,000
	3위		1,000,000
입상선수	1위		1,000,000
	2위		700,000
	3위		500,000

※ 대한체육회 당해년도 참가요강 세부종목 구분 기준에 따라 지급함.

[별표 2]

구분	포상금액(선수·지도자)			비고
	100%	75%	50%	
기준	첫 번째 메달	두 번째 메달	세 번째 이상	

[별표 3]

국제대회 포상금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포 상 금 액(선수·지도자)			비 고
	금	은	동	
올림픽대회 (동,하계)	5,000	4,000	3,000	
아시아경기대회 (동,하계)	3,000	2,000	1,000	
세계선수권대회 (종목별)	3,000	2,000	1,000	
세계대학경기대회 (동,하계)	2,000	1,500	1,000	